

제427회 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8일(금)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1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1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20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37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 제사법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후보자(정성호)를 포함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10시31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박은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이것 하고.....

현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 간의 균형과 통제를 통해서 우리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현법재판관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함께 균형 있는 법률관 그리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양심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소신, 가치관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청구했는데 잠깐 후보자의 선서 받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공직후보자 오영준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오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현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의 업무를,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이 자리를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인사청문회에 제대로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의,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도 수사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권계급입니까?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는 것과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 인사청문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내란의 끔 때 왜 계엄 해제하려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오고도 왜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 관저에 왜 몰려가 가지고 윤석열을 비호했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계인’ 집회에 가 가지고 참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계

속해서 옹호하실 건가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에 들어오셔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빨리 이 청문회장에 들어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야당 측에 빨리 법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청문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예, 김용민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청문회에 왜 야당 위원들,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 들어왔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논의했던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청문회 개최를 10시에 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일정입니다. 그 합의된 일정을 지금 마음대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태도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드립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청문회를 했던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오늘 오전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당, 자당 국회의원이 압수수색당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실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들이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란정당으로 정당해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정당해산 얘기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실 때는 정당해산 사유가 차곡차곡 늘어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방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회의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헌법재판관께서 잘해 주길 바라면서.....

그런데 오늘 제가 저희 법사위 업무방에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러면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려고 하시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나 그리고 또 김용민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 서슬 펴렇던 윤석열은 이제 재구속됐습니다. 그 윤석열을 배후에서 조정하던 김건희는 특검의 소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랄 일은 통일교와 김건희와 함께 김건희의 스승처럼 이야기되고

있던 건진, 윤석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던 건진, 그 건진의 아마테라스 신전까지 건진 신당에 모셔져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진 전성배와 통일교 윤 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는 아직도 확실한 윤석열의 최측근은, 핵심은 권성동이다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그 사이에서 어떤 로비의 중간 거간꾼을 했는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샤넬백은 뭡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뭡니까? 수천만 원짜리 팔찌, 귀걸이 이것에 저희들 전부 다 경악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고 문자 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빌린 것이냐라고 문자 답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 재산등록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자…… 재산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게 통일교에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귀걸이·팔찌 그리고 샤넬 가방 그리고 그 사이에 건진 그리고 권성동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인사 청탁,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데는 건진과 이창수 지검장의 부인, 그러면 그 사이에 권성동, 김건희, 윤석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옹호하고 보호하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의 동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걱정되면 빨리 들어와서 오늘 법사위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현법재판소의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현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는 현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9년 대전에서 출생하였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약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평판사 시절 3년, 지방부장 시절 4년, 고등부장 시절 3년, 총 10년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상고 사건을 검토하였으며 1년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관련 제도와 쟁점, 법리를 분석·연구하고 새로운 법리도 구상해 보면서 사회제도를 다각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등부장이 된 이후로는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숙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하였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거듭 고심하였습니다.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을 적용하여 판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재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성의를 다하여 경청하고 경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 규범으로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입니다. 주지하시듯이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1988년 첫걸음을 뗀 이후 약 37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다수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 세대, 지역, 이념, 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 보호 영역이 생겨나고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 환경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사회 변화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 조정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국민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주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 순서를 보면 여야가 교대로 교차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10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국민의 힘

의 요청과 우리 권유에 따라서 30분 연장해서 10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주질의는 여당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뒤에 야당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주질의 순서를 뒤에 드리는 걸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법원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던 분 같습니다. 법원 내에서 특히 칭찬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갖는 중요한 의미, 국민들이 갖는 그런 시각들 여기에도 부합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들 몇 가지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이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균택 위원** 그런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입장이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균택 위원**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입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심판권을 갖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 측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4심제로 가는 수가 있다, 소송절차를 너무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찬반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그 입법권의 행사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해서 헌법질서에 부합하고 그것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가장 강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대법원도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전체 헌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4심……

○**박균택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4심제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 헌법소송이라는 것은 일반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독자적인 소송 형태라고 생각

합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3심을 거쳤다 그래서, 헌법소송은 민사소송에 대한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 결과 대법원의 어떤 판단 작용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서 공백이 없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새로이 재판하는 헌법소송이기 때문에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판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그런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각하라는 형태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걸러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재판 자연의 우려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민주주의를 있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작년 12월 3일 불법 내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하는 어떤 정신적인 밑거름이 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5·18 정신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이 될 것이며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후보자께서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다소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승계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당시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사건에서 큰 획을 그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개헌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그러면 개헌이 될 경우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금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송이 진행이 됐고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위자료 판결을 일반 법원에서 하면서 지역별로, 재판부별로 위자료 액수가 너무, 3배, 4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미 기판력이 발생해 버린 낫은, 저가의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인데, 후보자 보시기에 이것을 입법적으로

나 헌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기관력의 문제를 극복하고 형평을 도모하는 방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일단 법원에 있어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서 균일하고..... 어떻게 보면 일관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편차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는 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이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관력과 관련해서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깊은 연구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여서 좀 생각을 가다듬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곽규택.....

○**장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 예.

장동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우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청문회에 제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당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청문회를 늦춰 줄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는데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작년에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 그리고 ‘기관 간 협조를 통해서 임의제출 형식을 취해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국회라는 국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서 작년에 냈던 이 입장이 지극히 당연하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까지 시간을 좀 늦춰 주셔서 저희들이 10시 15분에 의장님을 뵙고 같은 취지의 입장문 정도는 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드리려고 갔는데 의장님의 금요일마다 있는 회의가 늦어져서 저희 면담이 늦어졌고 그에 따라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과정 또한 좀 길어져서 저희들이 처음 약속드렸던 10시 반까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의장님께서 입장 표명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같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손을 훑)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송석준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중요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침 일찍부터 우리 동료 의원들 의원실이 이렇게 압수수색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반계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조각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여러 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수사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입법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을 하고 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의장님을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고 왔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특검은 법사위에서 우리가 심사를 했고 또 국회에서 만든 특검 아닙니까? 특검은 그 본래의 취지는 의회에서 소수 야당이 어쩌면 권력에 자유롭게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수사제도인데 그 수사제도로 만든 특검이 오히려 소수 야당을 상대로 또 이렇게 중요한 입법활동을 하는 와중에 국회로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또 현장에는 많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폭우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이 어려운 와중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돼야 될 소방청, 지휘해야 될 소방청 지휘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업무에 차질을 준다면 특검 활동에도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특검 심사를 한 법사위원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수사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또 중요한 입법활동이나 국민들의 구조활동에 차질이 없게끔 순서를 봄 때 제대로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석** 지금 3개의 특검이 작동되고 있는데요. 이 특검은 사실은 우리 법사위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취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서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특검 활동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개별 의원님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루빨리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또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이 작동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특검, 비정상적인 특검의 시대는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께서 특검이 조기에 종료되면, 바람직한 수사기관의 정립들을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까지만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최근에…… 국회 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특검에 의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영장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특검이 임의제출의 형식을 빌려서 해도 될 것을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또 법원은 깊은 검토 없이 그냥 발부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떤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참고인의 경우에도 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또 지금 몇 건의 영장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별로 의미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영장을, 이런 관행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라도 저는 국민한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장을 면담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야당의 일이니까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마시고, 이것은 결국 같은 국회의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해야지요. 정당한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서 또 상당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영장 신청과 또 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균형이 깨져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발부하고 그리고 또 의원실 앞에 가서, 물려가 가지고 망신 주기식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은 영장 집행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의를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너무 남발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자제하는 그런 메시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장에 면담을 요청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일단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법리적인 견해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주진우 위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평균적으로 헌법소원 처리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통계적으로 180 내에 처리하는 것이 한 74%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2년 넘은 사건이 한 13% 정도대로 해서 약간 지체가 상당히 문제로.....

○주진우 위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침해당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헌법률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입법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위헌적인 법률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

임시적인 구제 조치인 가처분은 더 심각합니다. 가처분이 지금 정치적인 사건 외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관련된 결정에서 현재가 의미 있는 결정을 한 적이 있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보겠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결국은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심판이 된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 이유는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제가 이유는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지금 있는 사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사건도 못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헌법소원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처리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그냥 종결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록을 갖다 보거나 하는 내용들은 극소수고 지금 주어진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 대로라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갔을 때 1심부터, 2심부터 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것은 아니고 확정된 판결이나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1심·2심에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 할 수 없

고 확정되고 나면, 그러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게 꼭 대법원 판결만 아니고 2심 단계에서 확정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1심, 2심이든 어쨌든 당사자가 포기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이, 법원에 계속 오래 계셨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주진우 위원** 법관으로서의 당시 소신이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기관의 어떤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하던 일도 못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당연히 재판 자연 문제가 생기지요. 대법원 판결도 확정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재심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주진우 위원** 그런데 재심제도도 판결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을 위해서 재심조차도 사유를 한정시켜 놨는데,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모든 판결에 대해서 제한 없이 사실상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고심을 개편해서 대법원에 있는 계류 중인 사건도 좀 줄여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했을 때 좀 더 신속한 구제를 받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헌법재판소까지 법원 판결을 들여다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든지 위자료를 못 받고 있는 어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대방 측에서는 시간 끌기용으로 분명히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같은 것 제기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모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규정이라든지 헌법 원리에 대한 중대한 헌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본안까지 가는 비율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이 결국은 최종 상고심에서 접수되는 사건이 우리……

○**주진우 위원** 잠시만요, 해외 입법례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어떤 법률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민사소송도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야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봐서 구제 신청을 해서 민사가 확

정됐는데 그것도 만약에 상대방이 와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일단 그 집행력이 멈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4심제로 운영됐을 때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제도 논의가 나온 것이 민주당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재판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봤을 때는 입법안들이 그 이후부터 막 발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정당성이 있다면 지난 정부 초기부터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발의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구도가 민주당에서 추천한 재판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을 현재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사실 헌법재판소원제도는 학계나 실무에서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그런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소원제도가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당사자가 신청하면 재판이 계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아까 미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진우 위원 예.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아까 말씀드린 재판지연제도는, 사실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연구관을 오래 해서 많은데 재산권 문제라 그래서 다 헌법 위반으로도 보지 않는 게 사실 대법원 판례로도 축적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재판 지연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원이 제기된 뒤 1개월 내에 사전심사부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기각하든지 각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사실상 그런 부당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으므로 다음 질의 순서인 곽규택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 기존에 합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한 후에 청문회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자택과 국회의

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도 항의 방문을 했고요.

조금 전 국회의장이 하신 답변이나 법사위원장께서 하신 답변이나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지금의 특검 수사가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특검은요 당연히 사법통제의 대상이고 국회에서 견제해야 될 대상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한 과거의 정치검사, 정부에 대한 충견? 지금 그분들이 특별검사 하고 있고 파견검사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검사라는 가죽을 입었을 뿐이고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의 홍위병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특별검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곽규택 위원** 후보자님 경력을 제가 쭉 보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평판사일 때도 하셨고 부장판사일 때도 하셨고 한 번 정도를 하시면서 한 7년 정도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셨고요 또 수석재판연구관도 하셨어요. 맞으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면 법원 내에서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치밀한 법 검토 또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겠다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뉴스로 접한.....

○**곽규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재판을 빨리했다, 신속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분명히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드러누웠어요. 재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 했냐 하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나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호중, 지금 행안부장관후보잖아요.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9명, 파기환송에 가담했던 대법관 9명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같은 날 시민단체에서 딱 고발을 해 줍니다, 공수처에다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건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발의 안 했어요.

○**곽규택 위원**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했구먼.

- **김용민 위원** 못 했어요. 못 했을 겁니다. 100명을 못 채웠잖아요, 100명을.
-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과기환송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고발당하고 탄핵소추당하고 국정조사당하고 이럴 정도의 위법인가요?
- **서영교 위원** 예.
- **곽규택 위원** 서영교 위원님이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참고해서 대답하시지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는 헌법기관상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 **곽규택 위원** 그런데 재판연구관 오래 해 보셨잖아요. 대법원 재판이라고 하는 게 사실심이 기본적으로 아니고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안이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를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 기록을 검토할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동일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따져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심과 2심을 거쳐 오면서 그 두꺼운 기록들, 사실관계와 관련된 주로 증거가 있는 그 기록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1심·2심에서 정리된 이상은 그거를 확인하려고 기록을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연구관 오래 하셨던 입장에서?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기본적으로 사실오인은 상고 이유가 안 되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곽규택 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재판연구관 하실 때 그 기록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런 경우에 대법관들께서 기록 하나하나를 읽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대법관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해서 국정조사 하고 탄핵할 일인가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현실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잘 아시다시피 사건 수가 90년대에 비해서 4배 정도 폭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곽규택 위원** 후보자님,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 아니십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 **곽규택 위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맞습니다.
- **곽규택 위원** 대답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세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후보자님은 잠시 국무위원 대기석에 좀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4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송석준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하시되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정성호 후보자의 경우에 경기교육청 그다음에 연천군·동두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국회법 개정하면서 겸직금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칙에서 3개월 이내에 사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 2개월 반 정도 도과된 시점에서 사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국회사무처에 문의를 했어요, 겸직 여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겸직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사실은 즉각 사직을 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3개월을 도과해서 2개월여를 더 근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회법 다른 규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영리 업무 종사다, 그 행위는 6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물론 당시 국회법 경과규정에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규정에 또 보면 영리 업무 종사를 하고자 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신고 행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고한 것은 겸직에 대한 신고를 했고 국회사무처로부터 3개월 이내 사직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2개월여를 하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본인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갖다가 겸직이 아니라 영리 업무 종사라고 뒤늦게 해명성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왜 안 했냐 했더니 얼버무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어제 법사위 인사청문회장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버젓이 인사청문보고서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국회법상 겸직불가 통보 수령 후 3개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내 해당 직을 모두 사직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재산 증가 등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고 겸직이 아니라고 둘러대서 결국 영리 업무 종사라고 했지만 신고의무 이행도 안 했어요.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무슨 청문보고서 채택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잘 살펴보시면 각자 위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 열거해 주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송석준 위원님의 지적사항 외에도 종합의견 제4페이지를 보면 ‘과거 국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의 겸직을 일정 기간 유지한 것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치 않으며 단기간에 배우자 재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정확히 지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까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은 여당 측 위원님들의 설시 내용을 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넣지 않고 각자 주장한 부분을 다 병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의견에서 저희 여당 측은 적격이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측에서 적격의견을 빼 달라고 해서 사실은 적격의견도 빼서 적격과 부적격의 사유만 병기한 채로 이 종합의견이 작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신동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의견 ‘단기간에 배우자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를 포함시켜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배우자의 예금이 17억 이상 증가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중여세 부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발언에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과거에 다른 국무위원후보자께서도 중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 지난 정부 때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11억 정도를 누락해서 2억 5000만 원가량의 중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나 정성호 후보자 같은 분은 기재위원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부 간의 중여 한도액을 몰랐다는 그런 발언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끝까지 다 따져 묻지 않은 것은 그냥 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위법사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도덕적 흠결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를 보면 ‘일부 청문위원은’ 해서 4페이지와 5페이지 초반까지는 야당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5페이지 ‘일부 청문위원은’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당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균형적으로 다 맞춰졌고, 이게 뒷부분에 있으니까 종합의견처럼 보이지만 종합의견이 아니고 저희는 이게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기가 싫으시면 여당 위원들의 지적을 먼저, 말을 당기고 야당 위원을 마지막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뒤의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적시되어 있고, 방금 신동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여당 위원이 그런 의견을 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설시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너무 많은 걸 양보했어요.

○**송석준 위원** 그것 명확히 해 주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적격, 부적격 표현하지 않고 여야의 주장을 고르게 다 담아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된 형태로 종합의견을 내는 것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내

용이 좀 더 충실하게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지적을 했는데 좀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민 위원 그것은 앞에 있어요, 앞에.

○신동욱 위원 앞에도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박준태 위원 앞에 많이, 특히 앞부분에 많이 생략돼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 앞에 발언하신 것은 전체 다 나와 있고, 이건 5항이잖아요. 이건 그 요약한 겁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열람시켜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족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이라는 거액을 90년대에 빌려줘서, 지금 가치로는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인데 원금도 이자도 전혀 받지 않고 아직까지, 사실상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고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다른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보면 편법 중여의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날 날카롭게 묻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적한 문제가 빠졌으니까 문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많은 내용들이, 지적된 내용들은 우리가 청문회 열심히 했는데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사항은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종합의견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채택보고서 전체에는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답변사항 전체가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인 사항은 종합해서 의견을 압축한 내용만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주셔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벼전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동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당초 김용민 간사하고 제가 어제 간사 간 논의를 할 때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제가 의견을 최종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김용민 간사님께 ‘월요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있고 또 저희 법사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월요일 날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드렸는데 지금 가능하시다면 논의는 오늘 한 것으로 하고요 최종 의결, 채택하는 것은 월요일 날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여당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제안을 지금 하신 겁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제 내용적인 합의까지 다 마쳤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까지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인사청문회 계획을 저희가 합의하고 처리할 때, 일정을 합의할 때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늘 하는 것으로 이미 앞서서 일정 자체를 다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월요일 날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가 있어서 아마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런 지시를 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 장관들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과 법사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각각의 상임위에서 각자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법무부장관의 공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임명하지 못하고 월요일 날 표결하면, 월요일 날 또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힘 위원님들 중의 일부는 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실 텐데 월요일 날 회의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월요일 날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잡아 두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모여서 이것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그냥 억지 부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종합의견만 지금 배포해 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배포해 드린 겁니다. 그 앞부분 내용은 여야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셨던 것을 그냥 속기록처럼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고 종합의견을 우리가 그중에서 추출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여야 합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나눠 드린 것이고 이 내용도 합의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해 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부분 다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합의가 된 걸 가지고 자꾸 트집 잡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표결 처리, 아니 합의된 대로 오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다시……

○위원장 이춘석 장동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 간 이 종합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속기록처럼 정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다른 원내 지도부 간에 의견 조율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결만큼만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하지만 보통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기 때문에 의결만 할 거라면 그전

에 잠깐 모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만을 미루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지금 이렇게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법무부장관이면 여야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저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오전에 청문회 마치고 중간에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중에 처리하더라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의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은 헌법재판관후보자님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청문보고서의 채택은 지금까지 저도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다 종합의견을 가지고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정리와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임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 나눠 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 실무진에서 다 수정을 해 줍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다 합의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당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단 하나도 안 빼고 100%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에 의해서 자꾸 연장되고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자료 한번 참조해 주시고 간사님들께서는 다시 협의 시간을 가져 주시고, 안 되면 오후에 시작할 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후에 시작해서 다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사진행발언과, 이 부분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필요하시면 오후 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11시42분)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후보자님,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이번이 서영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어쨌든 오후에 다시 잘 합의되기를, 위원장님의 정하셨으니까……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 나오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56살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남성.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서영교 위원** 매번 문제 제기하던 게 뭐니까? 서오남,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항상 문제 제기가 서오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은 사람들의 기본권, 기본 헌법,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다 보려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지 못한 또 대표적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아픈 의견, 다 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서영교 위원** 더 아픈 사람들의 의견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족·생존자 관련해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갔어요. 그 유족들과 그리고 생존자들이 사람들이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다른 판단을 내리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1심 법원 할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1심 법원을 하면서 ‘청구권자금 중 무상원조 3억 달러 반환해서, 우리들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갔다 왔으니 우리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국회 제정법률에 따라 다른 산업에 사용되었다’, 다른 산업에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행위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법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관이시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서영교 위원** 아까 재판 헌법소원 이야기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랬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들의 기본권이 다 침해됐잖아요. 전쟁에 끌려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누군가는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든지 아니면 판단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런데 그 사건은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서영교 위원** 청구권자금의 사용하는 법률이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나요? 전쟁에 내몰아 보내고 다시 내 목숨의 값, 그 이야기 할 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 사건이.....

○**서영교 위원**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어떻게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사건이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중간에 껴 가지고 실질적인 보상도 못 받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위안부 할머니들 모든 분들, 그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시 판단하고, 제안이 온다면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서영교 위원** 윤석열은 대통령이지만 파면당해야 될 대상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파면만 당하면 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되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귀연이라고 하는 법관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시켰어요. 구속은 날로 한다라고 하는 걸 시간으로 한다라며 그리고 체포적부심도 구속 일자에서 빼면서 구속취소시켰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시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결정은 일반적인 실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일반적인 실무랑 다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자예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예요. 그런 자를 법관은 독립적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구속취소시키면 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을 못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헌법재판관으로서 만약에 또다시 지귀연에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지귀연이 구속취소시킨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나갔다고 치고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온다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기본적으로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 유추해서 잘못된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을 아무리 풀어 줘도 윤석열은 영원히 구속되고 윤석열의 최하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시니까, 대한민국헌법 1조 1항은 뭐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서영교 위원** 2항은 뭐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서영교 위원** 이 내용을 항상 외우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외우시기 시작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자·대통령·국회의원·판사·헌법재판관 모두 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 제66조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평양에 드론기를 보냈습니다. 드론기를 보내고 그 드론기가 평양 김정은으로부터 파악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무인기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노리고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군사법원 국정감사장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저희가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라고 했더니 당시 김용현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인기 띄워서 박수 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감사를 갔는데 김용현은 당시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몇 번 띄웠느냐면 일곱 번 띄웠습니다. 일곱 번 띄우고 또 한 번은 저렇게 평양에서 발견되게 했습니다. 무인기를 띄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양 동향을 파악하려고 무인기 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만들어 낸 윤석열은 헌법 66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몽골로 사람을 보내는 등 이것은 외환죄에 해당된다, 최소 상

대를 이롭게 한 이적죄에 해당되는데 저는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정찰하려면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찰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20km 위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0.3m짜리까지 볼 수 있는 글로벌 호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민트 등 여러 가지 정찰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인기를 띄워 놓고 북한에 발각되게 해서 전쟁의 위기를 만든 윤석열은 헌법 66조 위반 외환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 66조 3항은 뭐지요? 한 번만 더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후보자님, 재판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서면답변에서 후보자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법관, 법조인으로 개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드셨는데요. 거기에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 존경하는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무료 변론 활동을 많이 했고요. 해방 후에 사법부가 제자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제대로 기강을 세워서 사법부가 현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운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개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권력자에 굽하지 않고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많은 법관들께서 존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서울대, 남성, 엘리트, 기득권 계층에 계시는 재판관후보자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이자 헌정질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 간에 균형을 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은정 위원 그 결정이 국민 다수의 법감정이나 상식, 정의 관념과 괴리되는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고 저렇게 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방안으로 대법원장지명권을 폐지한다라는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제화한다라는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현행 헌법의 개정 움직임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의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헌법재판소법 5조 1항 자격요건에 재판관 자격이 들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재판관 64명 중에 77%가 서울대 출신이고 82%가 법관 출신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여성 재판관이 단 8명에 불과했습니다. 40대에 임명된 재판관은 단 2명이고 세대적 다양성도 좀 미흡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층, 세대, 성별, 지역 등 다양한 시각과 삶의 경험이 헌법재판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도 지적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호주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은정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호주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했던 법적 제도이고 남성을 호주로 하여 가족 구성원을 편제하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였습니다. 여성과 자녀의 법적 지위를 종속시키고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과 2008년에 전면적으로 폐지를 통해 사라졌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대한민국 가족법의 역사에서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2005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폐지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 재판관 중 여성이 단 1명뿐이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그리고 대다수 50대 보수적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정치적 의사, 법감정, 성인지 감수성, 정책적 정당성 및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기술적 논리와 편향된 가치관에만 의존하여 판단될 경우에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의 실현에 어떤 위협이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법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법관들께서 너무나 당연한 내란 우두머리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정 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법관들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

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또다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군택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던 재판소원제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지난 1974년에 8명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렸고 2007년 재심 법정에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사형 집행이 되었던 8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었을 경우에는 재판소원을 통해서 당연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며, 독일, 스페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서 재판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영국의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기구가 발표한 2023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지수가 167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소원제도가 이런 취지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재판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기표 위원님까지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님, 일단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감사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준비해 온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 내용이 된 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지귀연 재판부라고 하는 곳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은 원칙에 따른 결정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원칙이면 원칙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요. 가까운 것은 없겠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재판부가 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하기에는 조금……

○**김기표 위원** 명백하게 ‘시’와 ‘날’ 얘기가, 원래 ‘날’로 하던 것을 ‘시’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실은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오영준 후보자님도 법리에 아주 밝으신 법관 출신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때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됐던 시간을 의도적으로 빼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히 따져 보면 수사기관에서 체포적부심사까지 다 계산해서 그 전에, 구속기간 도과하기 전에 기소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구속기간 도과라고 판정할 수 있으니까 법에 엄연히 구속기간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빼 버렸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구속취소를 시킨 사건이지요. 그것을 원칙에 가깝지 않다라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빼라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김기표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았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당해 결정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원칙에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당시 대표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가능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이게 존중할 만한, 그런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내란 행위를 일으켰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면 존중할 수 없겠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파기환송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료 위원은 기록 안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전제로 물어보셔서 저는 마음속으로 참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재판을 하면 기록을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이 아무리 바빠도,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바빠도 기록을 봐야 하는데 못 봤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인데 기록을 못 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 질의라 제가 굳이 중간에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연히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기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적어 놨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파기환송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결론을 뒤집는 것이라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당연히 기록을 봐야지요. 대법관 1명으로서 의견을 내려면,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을 내려면 적어도 기록을 중요한 부분은 조금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그 사건에 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보면 4월 21일 날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니까 4월 22일 날 바로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첫 합의기일 바로 그날 진행해 버렸거든요, 그다음 날. 그다음에 4월 24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하고 그다음에 29일에 ‘우리 5월 1일에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선고기일 지정했고요. 그래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 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연구관 할 동안에는……

○**김기표 위원** 없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없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기환송이 되는 것 보고 후보자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느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좀 이례적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법원이 서울고법에 기록 송부하고 배당해 버리고 그다음에 송달까지 합니다, 변론기일. 그래서 집행관송달촉탁으로 아주 이례적인 송달 촉탁을 했어요. 그것도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부분, 송달 부분까지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지금 경험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더 질의를 하더라도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끊길 수는 있겠는데요.

아까 어떤 동료 위원께서 ‘사건이 적체되어 있어도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완전 본말을 전도한 것이지요. 재판소원이 필요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 구조하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국회 입법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적체되어 있으니까 현법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재판소원이 필요한 제도라면 입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이 재판소원은 법원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고 다시 지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법원이 다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로서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따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의견은 뭡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기본적으로 양 기관은, 대법원은 법률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관한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양 법원에서 한 법률해석이나 헌법해석은 각자가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표 위원** 아니, 너무 애매한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대법원 판결이 한정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그 판결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여기에 답변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존중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위낙 양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가지고……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그 정도 입장은 있어야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따라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 명확합니다.

○**김기표 위원** 본인의 입장을 묻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헌법재판관후보자이신 본인의 의견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도 헌법해석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원이 따라야 되는 게 맞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입장인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조배숙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됐지요.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우려가 큽니다.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걸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3인 그리고 국회가 3인 그리고 대법원에서 3인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삼권분립의 중추적인 기관이 이렇게 구성에 관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고 권력 간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지금 현실은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이에요. 과거에는 검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변호사, 현직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거의 다 판사입니다. 왜 이렇게 판사들로만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너무 사건이 적체돼서 현실적으로 경험이 많은 판사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게……

○조배숙 위원 아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는 아닙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법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법관 출신이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편중돼 있고 그리고 또 성향도 그렇습니다. 이제 임명안 통과되면……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재 재판관 9명 중에서 진보성향이 4명 그리고 중도 3명 그리고 보수 2명, 우리 후보자도 진보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4명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특정 연구회 출신이 대법관,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 이렇게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다양성을 훼손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게 헌법재판관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항상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보면 본인을 추천한 진영의 이념의 대리인 역할을 해 왔어요.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우려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부인께서 지금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주 훌륭한 판사신데 우리법연구회에서 약 9년간 활동을 했고, 같은 연구회 소속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주요 판결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이 있어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판사한테 ‘대법원이 부담 덜게 됐다’, 김명수 키즈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민노총 간부 사건도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는데 지하조직 요건이 불충분하다면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대장동 관련 재판도 1심에서 중형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는데요.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부부는 말이지요 일심동체예요. 그렇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고. 또 오래 살면 외모·취향까지 다 같아지는 데요. 저는 배우자의 이런 편향적인 판결, 정치적인 발언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 배우자도 재판부 내의 합의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보면 재판과 소추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서 기일을 자꾸 늦췄잖아요, 추정했고. 그런데 그 이유가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84조는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서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그전의 사건에 대해서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문적·사법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유를 대서 추정을 했다, 이것은 법원이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완전히 굴복한 것 아닙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4조는 명백하게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나머지는 또, 이 84조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둔 규정입니다. 이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면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요. 나머지는 이따가 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면 바로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에 대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시 30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춘석**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요지 부분에 대한 의견은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자구 정리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 행정실로 의견을 주시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요지 부분을 제외하고 종합의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 예.

○**위원장 이춘석**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결국 합의해서 처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는 합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오전에 야당에서 ‘월요일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안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됐다고 이의 제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왜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제 간사끼리 만나서 합의까지 다 하고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정성호 후보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여기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정성호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태도를 봤을 때 정성호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없이 월요일로 연기하자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간사 간에 합의가 다 된 것을 갖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월요일로 연기하자는 것을 어떻게 믿으며 정치적인 도의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원만한 합의 처리가 더 낫다는 생각에 ‘정성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정하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 의견을 다는 것 정도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중언부언입니다마는—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표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도의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야당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 나가면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채택할 것이라면 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다 평가하였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저는 표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깐 제가 정리 좀 하고요.

김기표 위원님이 종합의견 부분에 대해서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평가하였다’ 하는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찬성한 적 없어요.

예전에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 법무부장관 한 적 있지요, 천정배·추미애·박범계. 일방적으로 당파적인 법무부장관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는지 온 국민이다 기억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해 가지고 정말 나라가 시끄러웠던 경험 다 있습니다.

그런 것 봤을 때 어떤 특정 정당에서 국회의원 다선을 하고 친명좌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도 ‘적절하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다만 어저께는, 그저께지요. 다른 후보자보다 질문할 게 없었어요. 오늘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 정은경, 강선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질문할 게 없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찬성한 적 없습니다. 누가 찬성을 했습니까?

지난번 여야가 바뀌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청문회 한 적 있지요? 그때 분

위기하고 그저께 장관 청문회 분위기하고 비슷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 못 하겠다 끝까지 그랬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꼭 오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월요일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굳이 오늘 해야겠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청문보고서의 내용을 바꾸자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런 청문보고서를 왜 처음에 작성을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요. 오늘 여야 간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합의가 어렵다면 당연히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군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군택 위원** 과규택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아마 솔직히 이만한 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인도 속으로는 인정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성호 후보자처럼 어떤 도덕성 시비…… 정말 찾기가 어렵고 또 그만큼 합리적인 자세로 정치를 해 오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법조계 어떤 경험으로 보나 과거에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해 왔던 경험으로 보나 다선의 경험으로 보나 많은 분들이 그 능력 또 역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신뢰를 하고 지지를 해 오고 또 주변에서 인정을 다 하는 분인데 그처럼 완벽한 후보, 대한민국에서 저는 몇 분이나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여겨질 정도의 후보였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기어이 또 뭔가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99%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1% 정도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99 대 1의 균형을 잡아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힘 위원님들이 굳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거의 50 대 50의 칭찬과 또 부정적인 요인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어떻게 보면 균형 잡혔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이런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늦추자는 취지가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미루시는 측면이, 저는 내면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좀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위원님들에 대해서 월요일로 채택을 미루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너무도 합리적이고 또 동의할 만한 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 반대하는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또 힘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제 어떤 속마음에 맞는 찬성의견을 이번에 좀 내 주시면 통 큰 모습이고 국민들에게 국힘 위원님들이 또 법사위원님들이 존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까지만 하고……

○위원장 이춘석 마지막으로 말씀하실래요? 박은정 위원님도 신청을 하셨거든요. 먼저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다 합의하셨어요, 오늘 채택하기로. 내용도 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어떤 검증을…… 반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알지 못해요. 오히려 주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정성호 후보자의 답변에 감동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반대의 구체적인 이유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떤 게 문제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 수괴를 풀어 줬어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내란을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를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풀어 준 그런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우리 법사위의 결론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오늘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동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정성호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물론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 다른 장관후보자에 비해서 도덕적 문제가 적게, 그런 의혹들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후보자가 갖춰야 될 능력, 자질,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도덕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법무부를 그리고 검찰을 그리고 법무부 산하 여러 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밝혔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이나 그리고 저희들은 형사사법제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네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것으로만 말씀하시고 피해 가셨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피해 가시거나 그냥 회피하셨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정밀하

게 제도를 설계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말 신중하게 이 사법제도 개혁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오늘, 그리고 여야의 적격·부적격을 모두 담아서 하자고 했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 각 당의 여러 입장들이 있고요. 합의한 이후에 최종 결정 전에 서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시 그 합의했던 내용을 조금 바꿀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의 그런 무게를 생각한다면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합의는 간사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월요일 날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까지도 못 믿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상임위를 진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들이 있고 각 당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임위만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내 여러 입장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월요일 날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용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후보자의 청문 절차는 수요일 날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성호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는 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장동혁 간사님, 김용민 간사님이 이를 동안 청문 절차 보고 채택에 대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두 분 간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채택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월요일 날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순수한 판단의 문제로 판단되면 저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의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정무적 판단 또 원내대표단의 판단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 날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방금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무행정이 상당 부분 공백을 갖고 있고 이 조직의 안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 가 검찰개혁 문제입니다.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법무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어야만 우리 여야가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실 거지만 이 정도 판단하고, 저희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안에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적위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정리와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14시53분)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의결 절차 제3항을 마치고 다시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모두발언에서 보니까 헌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데,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랬습니다.

○이성윤 위원 우리나라 법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그렇지요? 이것은 법관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누구의 노력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하에 법관들이 독립된 환경 하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들께서 수십 년 동안 군사독재와 싸워 오면서 국민들의 피와 그리고 땀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성윤 위원** ‘법관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보자님, 그러면 어떻게 헌법질서를 굳건하게 지키시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법관은 결국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하겠다는……

○**이성윤 위원** 아니, 말씀은 쉬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사법연수원 졸업한 후에 만난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대전 근무할 때 한 번 만난 적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대전 근무 시절에 한 번 만나고 그 후로는 만난 적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 전 용산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12·3 계엄 당시에 후보자는 어디 계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당시 저희가 환송 연말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2·3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TV도 보고 방송도 보고 또 신문도 보면서 언론도 보면서 충분히 많이 알아봤겠네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과연됐습니다. 그 과연 결정문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거기에서는 윤석열의 내란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직무집행에 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해서……

○**이성윤 위원** 그게 바로 형법 89조·90조에 나오는 내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어서……

○**이성윤 위원** 내란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폭동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 않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것과 관련이 있는 사실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평가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성윤 위원** 그건 형법적 평가고 헌법재판소 평가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 읽어 보셨으면 이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형법 89조·90조에 나오는 내

란 행위다 그렇게 말씀 못 하십니까?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이 됐지요,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혹시 판결문 읽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그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게 지역당 비공개 정세 강연회에서 바로 음모, 내란음모만 했다, 예비·음모만 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됐어요.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윤석열은 내란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12월 3일 날.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거……

○**이성윤 위원** 내란의 예비·음모, 논의만 해도 해산이 되는데 윤석열은 내란을 직접 실행했어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이 내란 불법 계엄 후에 국무회의 하자 치유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은폐하는 문서를 사후에 만들려다, 조작하려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국힘은 또 어떻습니까? 명태군 게이트 사건을 보면 윤석열이 국힘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거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런 내용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국회로 못 들어가게 이리저리 빼돌린 것도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투표장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회의가 불성립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체포를 막는다면서 용산에 45명이 가서 인간 띠를 만들어서 체포를 방해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현재를 때려 부수자’ 이렇게 말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아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거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이 난입에 대해서 선동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게 다 헌법을 부정한 행위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

○**이성윤 위원** 통진당 해산은 모의·음모 논의만 해 가지고, 논의만 한 걸로 이미 해산이 됐는데 이렇게 실행하고 윤석열이 국힘을 장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또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국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성윤 위원**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습

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당이 정당해산 결정을 받으면 소속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원칙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통진당 사건에서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도 자격을 상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또 소속 재산도 국고 귀속이지요, 잔여재산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그것 인정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저는 국힘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내란특검 수사가 끝나면 반드시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국힘 소속 의원들이나 그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국고 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좀 양해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통진당 해산시킨 현재 판례에 비춰서 국힘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해산되고도 남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이번에 만약에 임명되시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많은 국민들께서는…… 헌법재판소는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우리 헌법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마지막 최후의 보루 기관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국민들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정신에 충실해서 모든 것을 심판에 임해야 되겠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후보자님이 혹시 특정 정파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 활동도 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31년간 법관 생활 하면서 그런 특정 정파적 이념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다르게 판결한 적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확실하게 그동안 법관으로서의 어떤 정파적 그런 것 없이 그다음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셨었다 이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이미 시작됐고 지금 한창 여러 가지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우선 헌법……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좀 넣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고 또 그러한 논의가 있는데 이렇게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송석준 위원** 그것이 갖는 파장은 상당히 크잖아요? 단순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다른 어떤 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으로 한다, 그것 언필칭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시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대법원 과기환송에 이어서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면 결국 그것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게……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미 과정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후보자님은 만약에 그 안건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소원 대상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정확하게 법의 어떤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결국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한 기준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6개월, 1년 안에 확고히 기준이 쌓여서 그 기준에 따라서 충실히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모든 재판 결과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 이제는 무수한 최종 확정판결된 내용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헌법소원 대상으로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 보완이 단순히 일부 미세 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헌정질서를 지키는 목표인데 지금 현재 대법원의 지위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엎는다면 그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다른 생각이라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컨대 입법권도 지금 의원님들이 소속해 계시는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입법권도 결국은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입법권 행사·불행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사법권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의 행사가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역시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헌법재판소의 일부 의견이 있기는 있어요, 그동안도. 그렇지만 대법원이나 다른 많은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어간 의견이 다른……

○**송석준 위원** 본인도 사법부에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게 의견이 팽팽하고 또 명문 규정이 있고, 더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모든 재판 결과를 갖다가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제4부, 소위 4심제로 간다면 이제 유권무죄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호사를 사 갖고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제가 4심제로 간다면 결국 능력 없는 사람들, 약자들은 더 이상 소송에서 감당을 못 해서 나중에는 모두가 다 포기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이제는 오히려 그야말로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헌법정신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그래서 헌법에서 명문으로 해 놓은 거지 입법적 판단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약자를 고려하는 것이 헌법정신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4심제로 갈 수 있는……

지금 4심제를 허용하자는 건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 송석준 위원 아니지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 송석준 위원 그런데 사실상 4심제로 간다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대한민국 법 현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부작용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석준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드립니다.

○ 장경태 위원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우리법연구회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민사판례연구회라고 지적을 안 하신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두 단체 중에 민사판례연구회 더 열심히 하셨던 것 아니에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우리법연구회는 제가 한 8년 정도 하다가 해산 논의를 겪고 이래서 도중에 탈퇴를 했고요. 우리법연구회는 아직 탈퇴를 한 바가 없습니다.

○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민사판례연구회는 탈퇴하지는 않았고 우리법연구회 논란이 있었다는 거지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 장경태 위원 31년여간…… 그래서 사실 오히려 더 민사연구회가 엘리트 판사를 모임이라는 평가가 세간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경태 위원 법조인이 아닌 저도 아는데 아시겠지요.

3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그리고 엘리트 판사 코스를 밟으셨어요.

군산지원, 강릉지원, 바닷가 근처에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군산지원에서는 한 2년 근무하고 강릉지원에는 1년 근무했습니다.

○ 장경태 위원 31년 동안 3년 빼고는 다 서울에 계셨네요, 주요 수도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전에서 2년 근무했었습니다.

○ 장경태 위원 2년 있었으면, 5년 빼고는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 장경태 위원 그래서 엘리트주의 판사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만약에 제가 그런 평가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위원 이제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명받으시면?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 장경태 위원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4·16 세월호참사 당시 국가가 신속한 구조 조

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을 확인받고자 했던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한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정확하게는 제가……

○**장경태 위원** 확인 안 하셨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장경태 위원** 세월호참사가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1년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 당시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런 결정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법농단이 일어나도 성역처럼 여겨지는 법관의 보호막, 현재가 법관의 방패가 돼서 되겠습니까? 국민의 방패가 돼야겠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주권위원회 설치하는, 자문기구의 형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 발의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는 현재만큼은, 최고법원이라고 부르는 대법원의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재판소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국민주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장경태 위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온 말들 좀 제가 훑어 드리면 전광훈, 전한길씨가 현재 경찰차 넘어가서…… 그러니까 ‘국민저항권, 헌법 위에 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현재를 불태우자’ 등의 표현을 합니다. ‘서울구치소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된다’. 강제로 어떻게 나오지요, 구치소를? 전광훈 목사 발언이고요. 신혜식 자유통일당 홍보부장은 ‘대통령 체포되면 차벽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가 즉결처형할 겁니다’. 누굴 즉결 처형할까요? 체포되면 서부지법에 가서 법관들을 즉결 처형하나요? 이런 난동 사태가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 비상계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담 넘고 시민들이 밤중에 뛰어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보니 줄줄이 다,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아마 사법부의 법관분들도 위태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서부지법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이번 12·3 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크게 작용해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이, 국민주권주의 모든 부분이 정말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새기셨

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 같은 필부도 가슴 깊이 새기고 삽니다.

35만 명의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함께 논리를……

크게 세 가지 논리가 있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에 대한 현재 논리가 내란 관련 회합을 개최하였다. 두 번째가 내란 관련 회합 과정에서 무기 탈취 등을 논의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란 관련 회합을 옹호하면서 내란 관련된 회합이 통진당의 활동에 귀속된다라고 크게 판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12·3 내란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다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위법적·위헌적인,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고요, 위헌정당심판을 현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첫 번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장경태 위원** 그리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으로서 당연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고요, 둘째. 셋째가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을 적극 옹호해 왔고 12·3 내란은 결국 계엄해제 결의안을 연기하거나 본회의를 연기하거나 자연시키기 위한 국힘의 활동에 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극 옹호해 왔던 점 등도 저는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형사재판을 기다려 보고 위헌정당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에 하나 법률이 개정돼서 법무부장관이 현재에 위헌정당심판을 신청한다든지 혹은 위헌정당 신청이 국회의 의결로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현재가 판결을,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실 건가요?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헌정당심판청구 이것 특검 수사 끝나는 대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든 법무부장관의 신청을 통해서든. 어차피 결국 법무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현재가 대법원보다 먼저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적인 판결은 현재가 하셔야지요.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적인 판결이겠지요, 형사재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대법원의 판결보다 현재의 판결이 먼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면 선후에 관계없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후보자님, 먼저 현재 재판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상당히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좀 비교되자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상당히 대부분 다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오 후보자님께서는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수호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하도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북한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주적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주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고 또 법관의 입장에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약간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이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한 채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답은 지금 못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적이다라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주적이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저희가 사용하기에……

○신동욱 위원 아니요,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주적의 여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이것 헌법재판,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을 여쭤본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것을 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용어 사용은 논외로 하고……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가장 위협이 되고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통진당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통진당이 아주 극단적 종북 성향을 보여 온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미 다 드러났고 해산될 당시의 이걸 보면 전화국 두 곳을 공격하는 계획, 경기도 평택의 유류저장소 등 주요 기간시설 공격, 사제 폭발물을 언제든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숙지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석기 당시 의원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된 다음에 거의 잠적 비슷하게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당시 25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고 반대는 14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보면 통진당이 굉장히 억울하게 해산이 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자꾸 하셔서, 이것은 지나간 사건이니까, 앞으로의 얘기는 대답하시기 어렵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통진당이 그 당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예비·음모를 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한민국헌법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형법에 보면 외환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외환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적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신동욱 위원 예, 맞습니다. 뒷부분은 차치하고요 외환유치도 그렇고 여적죄도 그렇고 공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우리를 공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드론을 날렸기 때문에 이게 외환이…… 국민들 굉장히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군사작전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이 부시 대통령을 외환죄로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엄중한 일인데 호크 아이가 감시하는 것은 괜찮고 휴민트를 활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활용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으로 보면 드론 보낸 게 외환죄에 해당한다면 휴민트도 외환 아닙니까? 북한에 우리 공작원을 보내서 북한 정보를 유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잘못된 것들, 그러면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전에 했던, 북한을 향해서 했던 우리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전부 외환죄에 해당합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세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드론 보낸 것은 계속 외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혹시 현재 후보자로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런 취지의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동욱 위원 그런 취지의 언론보도가 아니고 그런 취지의 민주당 쪽의 공세가 있는 겁니다, 특검과.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의힘이 12·3 계엄 이후에 내란을 계속 동조했다라든지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엄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너무 의아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기사라든지 어떤 시중의 소문만 가

지고 정당해산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전제가 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법원의 확정판결 나기 전에 현재에서 위헌정당심판 제소가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건 결국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때 민주당이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복잡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정치적 의미에서의 판단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그 부분을 정당해산의 요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분명히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후보자님, 재판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드립니다.

○**박희승 위원** 전에 아마 대법관 지명도 됐었나요, 후보자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2022년도에 있었고 2024년도에 있었고, 2022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였나요?

○**박은정 위원** 윤석열 정부입니다.

○**박희승 위원** 윤석열 정부, 2024년 당연히 윤석열 정부였을 거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재판을 좀 오래하신 분으로서 오히려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들의 정말 엄청난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 근무하시면 훨씬 더 본인의 실력을 발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도 잘 알고 있는 후배님이시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이 너무 특정 학교, 특정 나이대, 특정 직업군 출신으로 훌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도 서울대 출신으로 다 돼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청문회 하는 김상환 현재소장후보자도 서울대고 또 후보님도 서울대고.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특정 학교로 편중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법관들 대부분 다 서울대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승 위원** 반드시가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판관 되시는 분들은 특정 학교로 다 편중돼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작년에 사법의 정치화,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아까도 오전에 답변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희승 위원**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없었어요, 사실은.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재판연구관을 총 몇 년 했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 했네요. 9년 정도 했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총 10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10년, 그러니까요. 보통은 1~2년, 많이 해야 3~5년 하는데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어쨌든 그건 전문성을 많이 획득했다는 장점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그러한 과거에 없었던 이례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결과도 그래요. 통상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저도 법관 생활을 좀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결론도 이례적이고 절차도 이례적이고 왜 그랬을까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법원 구성도 그렇지만 현재 구성도 직역이나 학교나 나이대나 어쨌든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특정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은 하면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탄핵 재판이 올해 끝났습니다만 사회의 다양한 가치나 또 대립·갈등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그때 판단하는 그 재판관들의 배경이나 경력이 다양해야지 다 비슷비슷하면 결국은 그게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나 학습했던 것들이 한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현재 재판관 지명 통지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통령……

○**박희승 위원** 대통령이 전화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았습니다.

○**박희승 위원** 비서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희승 위원** 특이하게 지금 비서실장님도 충남분인데 김성환 소장후보자도 대전분이고 오영준 후보자님도 대전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희승 위원** 대전에서 언제까지 캐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출생만 그렇게 하고 주로 수원하고 대부분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박희승 위원** 수원, 서울. 아버님이 공직자셨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희승 위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어렵게 성장을 했고 또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심으로 삼는 게 지역균형발전 그다음에 사회의 다양성을 가장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경력을 갖췄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게 그런 동질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가치와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자신을 경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작년 공직선거법 재판을 할 때 대법관들 면면이, 저도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다 훌륭합니다, 지방법원·고등법원 재판할 때 자기 소신껏 재판도 하셨고. 그런데 정말 국민의 정당성을 선택받는, 국민이 선택하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제대로 된 반대를 하거나 반발하는 대법관 없이 그대로 그게 용인이 되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됐는지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그중에 1명이라도 이탈하면 전원합의체가 선고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논의 과정을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희승 위원** 아니, 본인도 앞으로 그런 일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다양한 논의와 숙고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감사드립니다.

○**박준태 위원** 청문회 준비하면서요 주변으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신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국민과 후배 법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준태 위원** 법관 출신이시니까 제가 먼저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을 좀 여쭤볼게요.

여당이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기관이 있는데 특검을 통과시킨 사례가 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혼한 일은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특검을 종전에도 실시한 것으로는 기억합니다.

○**박준태 위원** 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출범시키지 여당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정부에서 수사기관을 두고 별도의 특검을 발의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기억하시는 게 있나는 걸 여쭤봤습니다.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기억으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특검이 권력으로부터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진행을 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준태 위원** 그래서 대부분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야당이 주도를 하는 것이고 여당이 야권을 수사할 때는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 정부 안에 존재하는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수사를 특검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검찰 해체 4법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내용?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 내용 중에 수사·기소 분리하자는 내용이 핵심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결국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특별한 입장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방식이 검찰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개인적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그런 걸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박준태 위원** 입법적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준태 위원** 여당에서 검찰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그 내용을 좀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검찰이 독점된 수사 권력을 너무 남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표적수사하거나 수사절차를 위반하거나 또 여론전을 통해서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 온 행태가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들이 쌓여서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구조의 수사기관들을 만들어 가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법관 생활 하시면서요 검찰이 해체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좀 경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부터 학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는 건 기억납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특검 3개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검찰이 지적받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거지, 지역사무실 또 국회의원회관 등등을 압수수색하

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께서 작년 6월 달에 민주당 의원이 폐의자일 때는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있는데 국회 경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신 주기식, 여론 몰이식 수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에 계셨으니까요. 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기간,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보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면 훨씬 더 영장을 잘 발부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특검이 청구할 때 영장이 더 잘 발부된다는 얘기는 그전에 들어 본 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서 발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특검이라고 해서 영장이 더 쉽게 나온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 재판소원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제2항에 보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을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부분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헌법과 충돌할 수도 있는 이 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중심이 돼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본인들의, 그러니까 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오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의 취지와는 별개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법들이 맥락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대표로 있을 때 사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나왔던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거나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하자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오영준 후보자님,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그런데 오 후보자하고 이성윤 위원, 윤석열 전부 연수원 동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랬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성윤 위원 동기 때 어땠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훌륭하신 연수생이었다고……

○**박지원 위원** 윤석열이는 어땠어요? 그때도 그렇게 좀 이상한 일을 잘 했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지원 위원** 제가 보니까 윤석열도 어렵울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가 괴짜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군사학교를 보내 가지고 많이 맞고 자랐어요. 부모한테 좀 맞고 자란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그것 잘 몰라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맞고 자라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제가 지금 지귀연 판사한테서 3년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저는 지귀연 부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지요,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하고 아주 유능한 재판장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오 후보자는 다섯 번, 10년, 법관 생활의 3분의 1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으면 스스로도 유능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진짜 엘리트 코스만 다녔더라고요. 지방도…… 전부 서울에 만 계셨는데.

지금 박희승 위원이나 서영교 위원이나 박은정 위원 다 지적을 했어요. 헌법재판관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 중 아홉 분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덟 분이 서울법대고 마흔혁 재판관만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더라고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들만 모여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오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케이스로 오늘 여기서 청문을 당하고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지원 위원** 여기 청문보고서가 만약에 하자가 없어서 채택되면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해야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제가 민주당의 위임을 받고 한덕수 대행과 협상을 했어요.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을 해 가지고 3명을 국회 측 정당 추천이기 때문에 보냈는데 임명을 안 해요. 임명을 안 한 것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타당한 일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최상목 대행도 제가 위임을 받고 협상을 했어요. 그분은 두 분은 임명하고 마흔혁 후보는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임명을 안 하냐 하니까 여야 합의를 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당신이 임명한 두 사람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 국회법이나 헌법이나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한다는 법은 없다, 우리가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청문보고서가 합법적으로 채택됐다고 하면 대행은,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 법 있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못이지요? 잘못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더욱이 한덕수 전 대행은 내란 부두목이고 최상목 대행도 내란 동조자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위반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명석한 분이, 10년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하신 분이, 지방은 몇 번 안 가신 분이 어떻게…… 그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절차를 잘못하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무슨 법이 있잖아요. 처벌 안 받아야 돼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거기에 대해서 잘 수사를 해서 적정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지원 위원**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지원 위원** 시간 됐나요?

○**위원장 이춘석** 30초 남았습니다.

그냥 마치셔도 괜찮습니다.

○**박지원 위원** 나중에 할게요. 원체 유능하신 분한테 제가 질문이 준비가 안 돼요, 떨어 가지고.

(웃음소리)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때는 각오하세요.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는 우리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후보자님, 일단 지명 축하드립니다.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감사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아까 대한민국 주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적 아니냐’, 주적의 요건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최근에 가장 극심하게 훼손시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데 답을 못 하시지요. 최근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명확하게 표현했고 그게 탄핵 인용 사유였습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지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시킨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그 주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재판 안 나가겠다고 꼼수의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막 땅깡 놓는 것보다 더 심하게 특검이 수사하겠다고 부르면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재판 나오라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서울구치소 답변 보니까 ‘멀쩡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 오늘 구속적부심은 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자기 마음대로 훼손시키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재판소원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현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현법소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입법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잘못 알고 계시지요. 현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정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현재의 결정을, 한정위헌결정 위반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김용민 위원 현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말한 법령을 적용해서 법원이 판결을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때는 법원의 재판도 현법소원의 대상이다,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것을 법에 구체화시키는 것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기본적으로 그런 동일한 정신의 바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선고가 굉장히 늦어졌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 과정 혹시 기억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탄핵 선고가.....

○김용민 위원 국민들이 기대했던 혹은 언론에서 예상했던 선고기일보다 한참 뒤에, 한 두 달 이상 뒤에 선고가 이루어졌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때 국민들은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매일 집회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혹시 그 집회 현장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김용민 위원 그때 국민들의 분노 지점, 아마 안 나가 보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분노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아까 헌법 1조 2항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민이 아무런 결정권이 없냐,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헌법재판관 8명이 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사항이긴 하겠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하자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김용민 위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김용민 위원 탄핵은 징계절차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기본적인 성격은 징계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탄핵의 효과는 과연이지요. 공무원 징계에도 가장 높은 수위가 과연입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탄핵은 징계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수많은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인용된 게 단 2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탄핵 2건만 인용했어요,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다른 비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지나치게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인데.

한번 잠깐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의 요건이 이렇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여기에 중대성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중대성 요건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 선출직의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됩니다, 국민주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으니. 하지만 비선출직 임명된 공무원들에게는 중대성 요건 있지도 않은 걸 왜 함부로 집어넣습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섭 검사, 한덕수 국무총리, 안동완 검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런 사람들 다 현재에서 기각됐는데 그 뒤에 기소했습니다. 이게 재판이 제대로 충실히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보니까 기각했지만 그 뒤에 출국금지……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안동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현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하지 않다라고. 왜 중대성을 함부로 집어넣었습니까? 법에 있지도 않은 것.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때 기각시켰습니다. 이때 만약 인용했으면 이상민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내란의 공범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현재가 책임져야 돼요. 내란의 공범을 키워 줘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과 입장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중대성 요건이 명문에 없다는 위원님 지적 달게, 유념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는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후보자님, 4월 4일 날 있었던 탄핵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결정 요지를요.

‘청구인이 형법 위반행위로 구성했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소추 사유로 들었던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고 그중에 내란죄의 사유로 들었던 사유 중에 사실관계만 일부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결국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결정 요지, 헌법 위반 내용을 보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내용 등이 있고 기본권 침해나 영장주의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있지만 어디에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고, 당연히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추 사유는 철회되었기 때문에 판단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4월 4일 날 있었던 탄핵 결정문에 그리고 탄핵 결정 이유 중에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동의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정당해산에 관해서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써 그 행위를, 그 활동을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고 당원 개인의 행

위를 그것이 정당과 관련이 있거나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정당해산 심판이 될 수 없고 당연한 법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동의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알박기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위협 그리고 주권 침해 위협이 된다, 주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동일 비례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우리의 영해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중국이 그런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무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방해한 행위는 우리 영해에 대한,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장동혁 위원** 정부가 주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으로 제한을 하면서 부동산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더 쉬워졌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월 30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이 10만 가구를 돌파했고 56%가 중국인 소유다 이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거나, 국가의 3요소는 영토·주권·정부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구입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서 선거권·투표권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중국인의 부동산 구입이나 중국인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상 국제관계에 있어서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 부동산 구입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법제도 규율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말하신 쟁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일정은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더 생각을 가다듬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 주권 행사 그리고 영토와 관련된 부동산 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규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리고 답변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고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 이사 선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빨리 이게 이사 선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에 규정된 국회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되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동혁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소추’에 재판 포함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재판’이라는 명칭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등법원의 해석상 재판을 중지……

○**장동혁 위원** 고등법원의 해석이 아니라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법리적인 후보자의 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답변을 계속……

○**위원장 이춘석** 예, 답변드리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 84조가 ‘재판’이라는 용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46조는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의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5분만 시간을 좀 넣어 주시면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좀 더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사십 번 이상 했고 인사청문회에 관한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재소장으로 추천된 김상환 대법관후보자 때 인사청문특별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죽 인사청문회를 한 분들 중에 후보자님이 최고의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역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현재소장보다도.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치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천자들도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배님이나 동료들께 인사청문회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저는 소신 있게 발언을 해 주시는 것

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판단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똑똑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능하면, 본인의 의사나 이것들을 굉장히 절제해서 사용하고 계셔서, 청문위원뿐만 아니라 이게 생중계돼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신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때는 좀 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로 헌법소원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소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서면질의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 합니다. 저는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사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예를 들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추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검사의 무죄판결에 대한 불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이춘석** 나누어서 형사소추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부분 내에서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예를 들어 김상환 후보자는 대법관 청문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 헌법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태도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제시했어요. 보통 볼 때 재판소원제도와 대법관 증원의 문제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잘 검토해 보면 이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의 문제와 헌법소원제도는 상당히. 그런데 이게 한쪽은 찬성을 하고 한쪽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후보자님이 참 똑똑하셔서 새로 시집갈 시집 쪽의 편을 들어주고 내가 떠나야 할 친정에도 편을 들어줘서 시집과 친정에 다 부합하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대법관 증원 이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재판연구관을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한 고민과 성찰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제언을 해 드리고요. 이후에 보충질의할 때는 좀 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여야 간사님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진우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지금도 수많은 사건을 제대

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까지 또다시 욕심을 내서 현재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재판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1개월 내에 판단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현재가 법상 법정기간을 못 지키는 사건이 너무 수두룩해요. 그러면 모든 피해자들이 최소 1개월 이상 권리구제만 늦어지는 것이고 이게 또 사법부 권위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언제 현재에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기 대법원을 종점으로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도 굉장히 흔드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권력분립 차원에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아까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결국은 입법부도 현재가 무슨 위헌법률심판 같은 걸로 좀 권한을 제한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법부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 체계나 지금 현재 법체계에서 권력분립의 설계상 지금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현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현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견제하지요? 지금 현행 헌법이나 법률상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재를 다른 타 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현재는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마지막 판단 기관이라고 생각.....

○주진우 위원 헌법재판에 관해서 마지막 판단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의 범위를 늘려서 입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를 지금 사법부의 법적 판단 기능까지도 일부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권분립이나 여러 가지 권리분립의 원리상 현재에 대한 견제 수단도 늘어나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권한이 늘면 견제 수단이나 감독 수단도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재 재판의 독립성을 중시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 어떤 외부 기관의 특정 감사도 안 받겠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자정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고 권리분립에도 그게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을 법원의 판결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면, 사법부가 반대하는 이유도 사법부의 권위나 이런 결정의 독립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현재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거든요. 거기에 걸맞은 견제 수단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은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춘석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주진우 위원 그리고 또 헌법재판은 아시다시피 법적 판단 외에도 사법적인 판단 영역 외에 정치적 판단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습헌법에 따라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결정도 현재가 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도 뭔가 일부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다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도로 보장하는 반면에 여기는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국회가 직접 보내는 헌법재판관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입김에서 아무래도 사법부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하에서 사법부의 특정 판결을 가져가게 되면 그 부분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대법관 증원 문제는요, 이게 지금 시기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유죄판결이 나고 얼마 뒤에 법안이 발의가 됐고. 또 이게 현재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면, 심지어 100명 증원 법안도 있습니다. 100명 증원되면 사법부 판단이 무슨 약간 장난처럼 되면서 법치주의가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30명이 되더라도 지금 절대 과반인 16명을 이번 정부에서 임명하고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다수 우위의 구도가 그다음 정부까지 기속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기나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약간 침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짧게 답변하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좀 신중한,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후보자님,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택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은 하되 그 임명권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통설인 것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박균택 위원**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의결을 통해서 선택을 했는데 최상목 기재부장관, 한덕수 총리가 현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니까 뒤늦게 임명을 하고 또 본인들이 마음에 맞는 후보를 마음껏 제청을 했다가 제지를 당했지요, 현재에 의해서?

그 행태들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최상목 그다음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또 현재가 선언까지 한 의무를 계속 방치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방치한 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형법상 직무유기죄까지 될 수 있는지는 좀……

○**박균택 위원**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현재도 선언을 했던 구체적 의무를 일부러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직무유기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언젠가 미진한 정권이 출범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

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저도 동의합니다.

○**박균택 위원** 입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관 정년이 60세인 것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현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헌법연구관들의 자격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정년이 65세고 교수들의 정년이 65세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균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연구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게 헌법연구관들의 전문성 또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지금까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결정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많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규정된 대로라고 한다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장기미제 사건, 즉 180일을 넘긴 사건이 12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0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보니까 809일, 약 2년 3개월이 걸렸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후보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일단 헌법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건 접수 건수가 굉장히 늘었고요 난이도도 복잡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신속성은 지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연구관 증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적·물적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수도를 둬야 한다는 관행헌법 여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는 바람에 좌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이라든가 어떤 인구 분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이 중시되는 요새의 풍조를 생각하면 이 결정례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도 개인적으로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은 지금 아주 시급한 우리나라의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습헌법에서 말하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아직까지 유효한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후보자님, 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하셨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사법연수원 마치시고?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통상은 그런 경우에 사법연수원 마치면 군법무관으로 가는데 군법무관이 보통 39개월, 저 때도 그랬고 아마 후보자님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39개월 장기간 군법무관으로서 근무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재학 중에 합격하고 연수원 마친 사람들은 군법무관의 길을 보통 가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연수원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6개월 단기 사병을 하셨더라고요. 6개월 근무 어디서 하셨습니까? 아마 방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서 하셨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서울에 있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군법무관을 안 가시고 이렇게 6개월 단기 사병을 택하셨나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사실 저희 아버님의 바람이 좀 빨리 임관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런 권유도 있었고……

○곽규택 위원 6개월 마치시고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초임으로 가셨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연수원 마치셨을 때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가 초임으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단기 사병 하시고 서울 근무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6월 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하고 현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그런 법안을 냈어요. 현법재판관후보자님으로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건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현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것은 관습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법재판소는 광주에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독일 현법재판소는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 있다고 그래요. 현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광주 이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대법원과 현법재판소와의, 이 사법부 내에서의 최고 사법기관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헌법소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중에서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10년 동안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의 필요성이 문제가 된 사건들, 그러니까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대법원의 재심 사건 그 재판에 관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거기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30년 넘게 법원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 소원 이야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적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원에 계실 때 30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시거나 한 적은 있으신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재판소원을 해야 된다고 그런 논문을 쓰거나 주장을 외부에 공표한 적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대법원에서는 출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건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저는 이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의 문제도 헌법재판관분들께서는 찬성하실지 몰라도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라든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했을 때 혹여라도 대통령의 형사재판 사건이 또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정권하에서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 정 필요하다면 5년 뒤에 하자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결국은 이 부분은 입법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동안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굳이 지금 이 정부하에서 해결돼야 할 만큼 급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헌법소원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재판 헌법소원이 얘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럼요. 이제는 대통령이 됐어요. 5년 동안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있었던 완전히 잘못된 기소,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 그래서 재판으로 갔고, 아까 한 위원이 얘기했지만 1심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하나 하나 하나 나눠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회대 대법원장이 빠르게 해 가지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요.

파기환송 시키려면 꼼꼼히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파기환송 시키려면, 온 세상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윤석열은 과연당했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법원장이 나서서 며칠 만에 파기환송 시킨다, 대법관들 다 동원해서?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려면 그 사건을 사실 자체를 꼼꼼히 봤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희대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귀연 판사, 판사라고 독립적이라고요? 판사도 온 국민이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관후보자께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 헌법소원, 다들 법관을 한 사람들은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화성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잡았다고 감옥에 넣어 놓았어요. 혹시 태완이법이라고 아세요?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만든 법입니다.

법관들은요, 법조인들은요 법적 안정성 이야기하면서 살인범 공소시효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게 법사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국민이…… 그러면 영국은 살인범 공소시효 있나, 미국은 있나, 일본은 있나 찾아봤는데 다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법조인들만 ‘다른 나라 살인범 공소시효 있어요’ 그러고 15년이라고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이에 태완이의 살인범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해박이 돼 버렸고요.

그렇지만 다시 살인범 공소시효는 끝내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언론이 설득하고 태완이 부모님이 설득하고 그래서 살인범 공소시효는 폐지되었고, 살인범 공소시효가 폐지된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미제의 살인 사건이 다시 전담반이 꾸려져서, 화성 연쇄살인범을 찾아봤더니 원래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이라고 잡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범은 그 사이에 유전자를 영구 보존하는, DNA를 영구 보존하는 법이 통과되어서 DNA를 봤더니 이춘재라고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경찰, 검찰, 1심, 2심, 3심 대해서 똘똘 말아서 이 사람을 화성 연쇄살인범이라고 감옥에 넣어 놓은 거예요.

약촌오거리 살인범은 어떻게요? 15살짜리 소년을, 진짜 범인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시작을 잘못했어요, 경찰·검찰이. 똘똘 말아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놓고 1심, 2심, 3심이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다……

김신혜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 났습니다, 25년 만에. 제가 김신혜법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법조인도 이런 법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1심, 2심, 3심 대법원이 지고지선입니까? 경찰에서, 검찰에서 똘똘 말아 가지고 갖고 와서, 정치인이니까 그나마 항변이라도 하고 변호사라도 쓰지 불쌍하고 가난한 어린 사람들 똘똘 말아 유죄 때리고 무기징역 때렸어요. 그런데 이것 대법원에서 재심하려면 오래 걸려요.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서 재심이 됐고, 그렇지 못해요. 김신혜 씨는 이번에 25년 걸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 긴급조치 9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아니다, 아니다 왜 이렇게 이야

기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면서 저렇게 긴급조치 9호도 7년 만에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재판현법소원법이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위헌인지,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 검찰·경찰의 수사를 그렇게 받았는지, 고문 받았는지 다 보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봅시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헌법재판소법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독일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독일·대만·스페인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서영교 위원** 독일·대만·스페인 웬만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은 다 재판현법소원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똘똘 말아 했어요. 그렇게 했던 판사·검사·경찰 다 사과하고 또 일정 정도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난처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던 사람들 보호하는 부분에 앞장서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후보자님, 혹시 수사를 받아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작년에 박영재 지금 현재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에 검찰 수사를 참고인으로 받아 보셨고요, 사법농단 사건 때. 박영재 대법관께서는 검찰 조서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검찰개혁을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의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개혁 입법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찰과 이 규정을 근거로 검사들과 일부 보수적인 법조인들 그리고 또 언론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그래서 검찰청 검사만이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세요.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고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르면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아마 이 개혁 입법이 추진되면 검사들 혹은 또 일부 법조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 개혁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란 수괴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심사 중에 국회에서 다수가 의결해서 표결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주의자들, 검찰청의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가 수사하는 것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검찰주의자들은 국회에서 통과한 이러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또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권·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검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내 공무원일 뿐이다, 행정청의 행정공무원일 뿐이다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개혁 입법은 이러한 국민적인……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폐해, 내란을 저질러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지난 정부에 대한 반성으로 국민적 우려 속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후보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지켜봐 주시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건강한 검찰권을 가지는 것이 선진국다운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 입법을 오히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위험한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잘 출발하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나라 수사권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원활하게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몇 가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드론을 보낸 것이 휴민트나 이런 것과 같이 정보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외환죄가 되냐, 수사가 되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드론을 보낸 것이 일단 정전협정 위반인 것은 맞는데, 물론 그것을 놔두더라도 정보 파악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지요.

2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의 아주 소음이 많은 드론을, 무인기 이런 것을 보내서 실제로 추락해서 발견되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보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무인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보도 보셨지요?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뉴스 보도는 접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 가지고 하기 위한 용도로 보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통모가 있었다 그러면 외환죄가 될 것이고 통모가 만약에 없었다면 일반이적죄 이 정도로 의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게 정보 확보 차원에서 한 것인데 왜 수사가 되며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짚고 넘어가지요.

동료 위원께서 특검을 여당 때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지금 여당일 때 하니까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야당에 대해서도.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 발의를 했지요. 그때 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정권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정권 입맛대로 수사를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객관적인 특검을 마련해서 수사를 하자 이렇게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요, 특검의 제도에 대해서?

○현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김기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야당일 때 발의를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특검을 완전히 회수해 버리고 인사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면 아마 국민의 힘 쪽에서 더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이게 정적 죽이기니 표적수사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향후 인사권을 갖지 않는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 그 것은 오히려 정권의 영향력을 떠나서 정확히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검사들이 그 안에 파견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의 검찰청, 검찰총장을 수반으로 하는 그런 조직하고는 다른 거지요. 특검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4심제 우려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반대의견을 당연히 들어야지요, 제도를 만들 때는. 아마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현법재판소까지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합

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저도 옛날에 법조인으로서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보고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그때 그렇게 서두를 때 보니까 도저히 시간을 봐도 대통령선거 전에는 선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대법원이 의도를 가지고 파기환송을 하고 집달을 송달 촉탁을 해서 이렇게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피고인한테 보장돼 있는 상고기간 20일을 아마 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 버릴 것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해서 선고를 해 버리면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것을 그러면 누가 바로잡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최고심인 것을 이용해서 완전히 법적인 어떤 규정을 무시해 버린다든지 어떤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견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견제는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부분, 몇 가지 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든지 이런 규정을 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짜릿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4심제 운운할 것은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4심제는 저도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방금 특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특검이 객관성·독립성이 핵심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매일 수사해라, 더 세계 해라 이렇게 여당이 수사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검사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검찰이 해 왔던 강압수사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120명을 파견받아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누가 봐도 이 수사가 정치적인 성격이 의심되고 또 편파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후보자의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재판소원제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법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오랫동안 논의돼 오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기상, 맥락상 국회에서 다양한 방탄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더 크게 현안으로 부각되는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분위기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요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됐다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겁니다. 이 제도가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어떤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준태 위원** 그런데 이런 흐름이면 정치인에 대한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명예 회복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후보자께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헌법 제84조 관련해서요 제가 법리적인 논쟁을 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만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겁니다.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라는 기준 헌법학계의 주류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소추’라는 단어의 뜻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것이 기소와 소송수행까지를 의미한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의 시작점이 이곳 국회입니다. 정치권에서부터 그 주장이 나와서 일부 법학자들이 기준의 본인의 주장을 뒤엎고 ‘어,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소추의 뜻 자체를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성이 생긴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요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폭넓게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설을 뒤집어서, 단어의 뜻을 바꿔서 소추에 소송수행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기존에 쌓여 있는 학설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지요.

아까 후보자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소추의 개념은 기소를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형사소송법 이백.....

○**박준태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은 맞습니까,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84조에는 소송수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다, 재판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재판’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소추의 개념에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의 수행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246조의 문언입니다.

○**박준태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을 해 보면 검사의 공소유지 없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개념을 실제 형사재판을 할 때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재판이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소추’라는 단어 자체는 지금 소송수행이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재판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형사소송법 246조가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박준태 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헌법은 법학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 그대로 누가 읽어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런데 저는 법률가고 형사소송법 246조 자체가 소추를 공소의 제기와 공소의 수행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후보자님, 2004년에 현재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그때 논리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불문헌법이다 이렇게 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지금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데 대해서 관습헌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당시로부터 벌써 20여 년의 기간이 지났고……

○**이성윤 위원** 아니, 지금 본인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부분은 지금 국민들의 의사가 과연 그런지는……

○**이성윤 위원** 본인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지요.

○**이성윤 위원** 그 정도 입장이 없습니까? 이거요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관습헌법을 들어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결정하는 바람에 지방이 철저하게 비수도권은 소외되고, 소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반절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현재 재판관들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식 사고에 젖어서 서울식으로 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형배 재판관 말씀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역에 있다면 이런 판결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후보자님도 지금 보세요. 많은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특정 대학교 출신이 대부분이고 또 전부 다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본인 자녀들, 집이 다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지방을 배려하는 판결을 하겠습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카를스루에라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눈으로 서울을, 수도를 바라보면 이런 정도의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우리 헌법 123조 2항에 국토 균형발전을 헌법이 명령하고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국토가 균형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불균형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헌법재판소부터가 연구원을 강남으로 옮기는데, 헌법재판소도 물론 옮겨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연구원 지방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이성윤 위원** 저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잘못한, 관습헌법을 들어서 지방 소외, 지방 소멸을 재촉한 것 정말 심각한 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해야 되지만 저는 동학 정신도, 동학혁명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동학혁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동학혁명은 일반 우리 농민 민중들이 일으킨 최초의……

○**이성윤 위원**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민중을 사랑하는 정신이 바로 동학혁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동학혁명에서 나왔어요. 동학혁명에 참여한 사람 9명이 민족 대표 33인으로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3·1운동의 뿌리가 바로 동학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학혁명의 정신이 바로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의 발상지 전주에 바로 헌법재판소가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법을 냈거든요.

혹시 헌법재판소를 이전, 아까 어떤 위원님도 광주를 말씀하셨는데 사법 법조 3성을 배출한 문화수도 전주에 헌법재판소를 옮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의원님들이 잘 결정해서, 지방분권화하는 면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성윤 위원** 헌법재판소를 지역으로,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결정해 주시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결정해 주시면 따르는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관습헌법을 말씀할 때 현재가 스스로 말하기는 부끄러웠는지 수도의 요건으로 현재가 안 들어갔어요.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언제든지 지방에 옮겨야 되고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서울의 관점에서 지역을 보지 마시고 지역의 관점에서 관련 법을 좀 보십시오. 수도권과 지역을 차별하는 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의 눈으로 수도권의 관련 법률을 꼭 봐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사법제도의 근간은 검사 그리고 법관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

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검찰과 법원……

○**송석준 위원** 수사의 기소, 검사 그리고 또 최종 판단, 법원의 법관들. 그래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송석준 위원** 어쩌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가장 근간……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검사 또는 판사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관례 아닙니까? 물론 로스쿨이 생겼지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진입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검사와 법관은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립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4심제는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명백하지요.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들 발의 법안을 보면 대법관 숫자를 크게 늘리는 안이 상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송석준 위원** 마음 같아서는 어느 하나만 늘리고 싶지만 사법제도 시스템상 다른 여러 가지 정합성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봐서 신중하게 각 제도가 같이 개편돼야 되겠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송석준 위원**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경찰, 검찰 간의 수사권을 이미 1차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많은 것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일선에서 중요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또 너무 과도하게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돼서 현장 경찰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그 얘기는 들어 보신 적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1차 검수완박이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는 와중에 2차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면서 소위 검찰 해체 수준의 기소권으로 검찰의 역할을 줄이고 수사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수처 활용하고,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이 문제는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일단 저희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니고 입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예를 들면 국수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또 쟁점이 있겠지만.

국가수사위원회같이 소위 말해서 모든 수사기관의 조정 권한과…… 그동안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이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통합하고 관할하고 군림하려는 그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의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일단은 저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가능한 범위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석준 위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나요, 그것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수사권과 소추권……

○**송석준 위원** 아니, 수사·기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국수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 언론이라든가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송석준 위원** 그것이 위헌성 여지가 많다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수사·기소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헌적 기관이 지금 법률안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면 그것을 심판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부분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송석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헌법적 잣대로 따져 보시고요. 우리 사법제도가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혼란이 오지 않게끔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발의된 법안, 심지어 여당 대표로 나선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국회에게도 정당해산심판권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아주 굉장히 쉬운 내용을 넣어서 정당해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해산이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정당해산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그 부분 지금 숙지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정당해산은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이것은 민주질서를 직접적으로 속박해서 결국은 민주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해산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좀 밝혀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복수정당제는 우리 민주주의 입헌 체제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해산의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 약력을 봤더니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엘리트 법관 길을 죽 걸어오셨고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여러 차례 하셨고 해서……

한 가지,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를 어디에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님이 의견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헌법 84조 문제는, 학자들은 보수 성향의 학자와 또 진보적 성향 학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님 정도가 되면 이것은 눈치 보지 말고 좀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재판 계속해야 된다’ 그랬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철회하겠습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왜냐하면 후보자님 같은 엘리트 법관이 이것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246조 까지 끄집어내는 게 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것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한번 좀 말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동욱 위원** 형사소송법까지 가야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소추의 의미 자체를 어디서 찾냐면 결국 법률에 근거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사소송법 246조가 소추의 의미에 관해서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공소의 수행도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도 동일하게 공소의 수행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신동욱 위원** 후보자님, 제 생각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법조계의 판단이나 해석이 필요치 않았던 이유는 대체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가진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인데,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요 2017년도에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후보가 됐을 때 그때도 재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헌법학자 중에 10명한테 물어봤더니 7명은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리고 진행하면 안 된다가 2명이고 유보한 게 1명이에요. 그리고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다가 10명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게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 후보자님 정도는 이런 것에 대한 소신이 분명하게 있어야만이 앞으로 마음 놓고 우리가 현재로 사건이 갔을 때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화면 하나 보여 주시지요.

이번에 제가 모두에 자료를 굉장히 상세하게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덕분에 제가 잘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대물변제계약을 모친과 맺으신 걸로 되어있더군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신동욱 위원** 저도 이런 방식의 계약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지금 후보자님이 월 40만 원 그리고 배우자분이 150만 원 해서 190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반포 재건

축 아파트가 건축되면 지분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이런 계약을 맺으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신동욱 위원** 그래서 정말 법을 잘 아시는 분답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머님이 이주하실 때 돈을 빌려주신 부분이 있고 해서 어머님하고의 금전 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적어도 계약관계로만 보면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의심,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머님에게 40만 원 용돈드리는 것을 이렇게 대물변제를 해서 하신 게 어떤 취지인지, 제가 사실 좀 상식적인, 일반인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는, 지분으로 돌려받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용돈은 별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초에 어머니가 모기지론을 받기를 원해서 월 한 19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경위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반포 재개발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몇 평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지금 평당 3억에 육박을 하고 있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여서 이게 나중에 지분으로 상속받을 때 지금까지 부모님께 보낸 돈이 1억이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다 제대로 상속세를 내는 것에 계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의 남아 있는 지분을 제가 다 갖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결국 증여세나 이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대물변제 당시에 시가로 환산한 지분만 받겠다는 것으로, 그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게 지분 비율로 하면 결국 2~3% 사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지분이 한 27%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1억 얼마를 주고 그것을 다 받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관서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용납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저희도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재판관후보자님, 힘드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괜찮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맞아 본 적 있느냐 했더니 맞아 본 적 없다고,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희승 위원** 혹시 살면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실패해 보거나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운전면허 시험을 몇 번 떨어져 봤습니다.

(웃음소리)

○**박희승 위원** 그것은 저도 미국에서 몇 번 떨어져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살면서 좀 큰 실패나 어떤 낙방이나 이런 경험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온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셨고 엘리트 코스를 걸어오셨고.

민사판례연구회 여기는 언제부터 가입해서 언제까지 활동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게 2001년경 아닌가 싶고요. 그런 학회 활동이라는 게 사실 법원에서……

○**박희승 위원** 아니아니, 변명할 필요는 없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2001년경입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민사판례연구회에는 판사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안 받아 줍니다. 모 대학 출신의 아주 소년등과한 사람들만 받아 주는 그런 끈끈한 모임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나중에 엘리트 법관을 형성하는 그게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의 실력이나 이런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후보자님이 너무 온실 속에서 법관 생활을 해 오시다 보니까 혹시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이런 헌법재판관 일을 수행할 때 너무 쉽게 한쪽 편으로 흐른다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을 않는다는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생각이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명심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또 말씀하실 때 보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어떤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법관 약 433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만큼 업무 과중에 비해서 대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초임 법관의 보수가 보니까, 제가 작년에 보건복지 있을 때 보니까 5년 차 경력을 가진 초임 법관의 보수가 인턴·레지던트 평균 월급보다 적습니다. 이런 실태를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대법원이 지방으로 간다면 그 유능한 인재들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연구관들이라든지 또 그 직원들, 딸린 가족들?

대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토를, 지방이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보완하는 건데 사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아시고, 앞으로 또 헌법재판소 근무하시면 직원들도 쟁겨야지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현재 사무처장이 지금 국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은 대법관……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는데, 사무처장이 와서 자주 하는 답변이 ‘재판관님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현재 사무처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이런 자리가 사실은 거의 유일한 자리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현재 재판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이게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사무처장도 재판관으로 겸임해서 보임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관 숫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1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지금 대법원 부는 3부로서 네 분이 3개 부를 구성하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행정처장은 재판사무에 관여 없이 지금 행정처장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희승 위원** 겸임하면 안 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희승 위원** 겸임하면 안 되냐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겸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외적인 활동이나 의원님들을 접촉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사건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약간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겸임하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정확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존경하는 분으로 개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을 뽑으셨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시절의 판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이것을 받아서 재판기일을 5월 15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질질 끌고 지연을 하다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졌지요. 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떠나서 사법부로서 정말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대법원장·대법관 탄핵하겠다, 또 그 합의 과정이 불투명하니까 특검으로 수사하겠다, 그리고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또 재판중지법, 대법관증원법 30명 내지 100명 증원하겠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를 제외해 가지고 무죄로 만들겠다,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하는 법을 만들겠다.

민주당이 있는 온갖 수단을 다 해서 압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5월 15일 날로 했던 재판기일을 선거 끝나고 6월 18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아무런 얘기 없이 침묵했어요. 이래 가지고 사법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지금 개인 김병로 이분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사법부가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제대로 기강을 세워 우리 사법부가 현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신 분이다’ 이랬습니다. 법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개별 재판부가 연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만 지금 사법부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 본연의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면 가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조용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압박하면 바람이 안 부는데도 그냥 눌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법부가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재판관후보님께서 현재에서 재판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할 소리는 제대로 하시고 꾱꿋하게 판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연구 중에 난민인정을 했다는 답변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난민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긴 한데 우선 이것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생쿠폰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민인정자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작년 3월에 코로나 긴급지원금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고 현재가 판단을 했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라는 웬데믹,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보편적인 긴급재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난민이라는 신분으로, 국민 세금도 안 내고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난민은 본국으로부터 생명·신체에 박해를 당해서 구조를 우리나라에 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체류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등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동등하게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차별 없이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후보자님, 저는 운전면허 딱 1차에 합격했는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단하십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우수하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황희 정승 같은 답변이다 하는데 후보자님의 말씀은 이것도 해당, 저것도 해당, 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렇게 비쳐졌다면 좀 다시 제가……

○**박지원 위원** 그렇게 느껴지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이 되시니까 똑떨어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오늘 구속적부심에 4시간 50분을 법정에 나가 있었어요. 건강한 겁니까, 건강 나쁜 겁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4시간 50분을 법정에 서서 재판장에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고 하면 건강이 괜찮은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만약에 4시간 동안 서서 변론을 했다면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나쁜 거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나쁜 거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서서 만약에 계속 4시간 반을 얘기하면서 변론을 했다면 일용 나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법정에 가서 요즘 서서 안 해요. 전부 앉아서 답변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제가 그러면 지금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특검에서 조사받아라 하면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일단 나가는 게,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나가서 수사 받는 게 원칙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건강을 빙자해서 안 나갔다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구치소 인치도 거부하고?

아까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일부 여당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특검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은 왜 생겨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것은 그냥 적당히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김건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양평고속도로에, 목걸이 받았을 때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특검 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지원 위원** 자, 보십시오.

광주 5·18 피해자가 지금 현재 신고된 사람들이 5807명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피해자도 보상을 받아라 하는 판결을 내려 가지고 약 이삼천 명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LKB 로펌에서 변론을 한 사람들은, 소송을 한 사람들과 지방 다른 로펌 이런 데서 한 사람들과의 배상액이 2배 내지 4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잘못된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재판하면서는 LKB 수준의 또 그 이상의 들쑥날쑥 배상을 하고 있는데 더 억울한 것은 시효가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한 이삼천 명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윤석열 법무부에서 반대해요. 양부남 의원이 행안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효 연기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건 잘못됐다, 국가 폭력에 의거해서 그러한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시효를 연장해 줘야 된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지원 위원** 만약에 시효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연장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런 국가에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2~4배 차이 나는 들쑥날쑥 보상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 부분은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은 또 그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게 다수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소송에 앞서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적인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국가가 피해보상책을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대표님은 진행이 좋아서 제가 제지를 안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답변 제일 잘하신 거예요.

.....

○**위원장 이춘석**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후보자님, 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김용민 위원** 그 내용을 잠깐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내용을 인정했어요. 1차·2차 고발장을 전달한 것과 판결문 전달한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발장의 내용이나 형식, 전달 시기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수사 촉구나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검찰 외부에서 누군가를 이용하여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지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 ‘위법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과연 이를 정도로 됐느냐를 볼 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인 것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성, 우리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을 할 때 중대성 심사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첫 번째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보니 중대성을 평가 요소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헌법질서를 고려하면. 하지만 비선출직인 일개 행정공무원인 검사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어렵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닐까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이 정도면 과연 백 번은 됐을 겁니다. 어떻게 검사라고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면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공무원 징계 기준 알고 계시지요? 일반 공무원은 이 징계 기준에 따라서 징계 양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손준성 같은 경우에 검찰청법 직권남용과 헌법의 공익실현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는데 그럴 경우에, 오른쪽 보십시오.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밀 누설·유출이면 과연, 과연시킵니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이것 실명 판결문 무단 유출했지 않습니까? 과연이에요, 과연. 고의성 아까 있다고 인정했어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만약에 검찰 수사관이 이러다가 걸렸으면 그 수사관 과연됐을 겁니다. 그런데 검사는 보호해 줘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검사를 싸고도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검사를 이렇게 싸고도니 검사들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징계를 검찰총장만 그동안 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다 했지요. 하도 하도 안 하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탄핵으로 검사를 징계하겠다 했더니 보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봐요, 한덕수에 대해서도 성실의무 위반, 헌법수호 책무 이런 것들 다 인정된다고 해놓고……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과연입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만약에 고의가 있었으면. 지금 출국금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봐줘요. 왜 이렇게 다 출출이 가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안 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미리 이렇게 사전에 까다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절대 그런 기준으로 혹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방금 보여 드린 것처럼 일반 공무원 징계 기준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공무원 사이에 형평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하나만 더 짧게 질의할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우리 헌법 89조 심의사항,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에 검찰총장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반드시 임명해야 되나요, 아니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심의하라는 의미인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임명할 거면 심의해라’인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김용민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후보자님, 아까 헌법 84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소추권을 없애는 규정입니까, 아니면 재직 중에만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일단 공소권 행사의 장애 사유만을 규정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후자의 쪽이 더……

○**장동혁 위원** 공소권 행사의 장애 사유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2020도3972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래서 소극적으로 결국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수사나 소추를 할 수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수사권·소추권도 여전히 살아 있고 공소시효만 그 당시에 정지가 되고 다만 공소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소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사라집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재판도 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중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재판권이 없어집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재판권 자체는 계속 살아 있지만 그것을……

○**장동혁 위원** 재판권 자체는 살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재직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재판은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것은 너무 당연한……

○**장동혁 위원**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장동혁 위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임기가 마쳐지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당연한데 그냥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이 비상식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법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린 거고요.

그리면 아까 소추의 개념을 공소 제기와 수행까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수사와 공소제기를 다 포함하시는 거지요? 공소제기와 공소수행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장동혁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추의 개념에 그러면 수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형사소송……

○**장동혁 위원** 수사는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수사도 제약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약간 더 해석이, 문언 이외에 약간 더 해석이 들어가서……

○**장동혁 위원** 공소 제기와 수행만을 포함합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해석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지요. 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여지가 많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장동혁 위원 그렇다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공수처법……

○장동혁 위원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지요?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도 공수처법을 명확하게……

○장동혁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 중에 직권남용죄가 범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의하면 재직 중에는 수사 자체도 제한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훨씬 더 크다고 아까 말씀,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사도 가능하지 않고 공소제기, 공소수행도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될 여지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수사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게 저도 사회적으로 그때 논란이 돼서 보니까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까지 확장된다고 규정이 돼서 결국 그 해석이 문제가 돼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들여지느냐 그런 판단 과정에서 그런 해석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그 관련된 범죄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것 역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그러면 해석의 문제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적어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실제로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재보충질의에서 이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된 후에 3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전국에 폭우로, 다행히 저희 지역구 해남·완도·진도는 약 사오십回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문제가 없지만 지금 국지적으로 거기도 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은 박군택 의원 선거구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광주가 영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다행히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일반적으로 나올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를 마치고 폭우 피해를 받는 지역구에 내려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도 좀 그러하니까 10분간만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양당 간사님께서 재보충질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상의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재보충질의는 사실은 한 3분 정도 내에서 원하시는 분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려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 위헌성 관련돼서 게임물의 사전등급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개별 사건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건인데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일단 작년 10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로 최대 인원이 신청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21만 명의 사람들이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 달라고 했고.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 제작하고 반입을 금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게임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산업과의 경쟁이 있는데 해외 입법례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이 부분이 K-콘텐츠 같은 게 이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게임도 K-콘텐츠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 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없어졌던 제도를 지금 계속 게임물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보다 오히려 속도전이 필요한 게임에 대해서만 지금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전등급제가 마치 사전검열처럼 작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 견해가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문제가, 해당 사건에 접하게 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숙고를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이게 결정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위헌성 여부는 게임물의 어떤 등급상의 문제점들도 좀 있지만 이게 작년 10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정말 많은 인

원들이 제기해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데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9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물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됐는데 가처분은 말할 것도 없고 가처분은커녕 결정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까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독립성의 침해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 인원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도 판단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겠느냐 이런 거고, 이 속도에 대해서 자연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사건 처리 상황이 좀 자연 상태에 있는 것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건관리를 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연이 되면 사회나 경제에 심각한 또는 당사자한테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그런 사건들은 좀 잘 분류를 해서 먼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아닙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청문회 앞두시고 지금 여러 장관들 청문회 하는 모습을 혹시 참고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뉴스에 나는 그 짤막한 모습만 본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교육위에서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쪽지를 준 것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일단 답변하고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시간을 가지면서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줬어요. 이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위원 중의 한 분이,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께 법사위의 장관후보자 청문회나 오늘 헌법재판관후보자 청문회는 위낙 후보자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물어보는 쪽에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런 적은 없고 약간 제가 대답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게,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꾸 형사소송법 규정을 말씀하세요, 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사인 소추를 금지하면서 검사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것이지 거기 나오는 일부 문구를 가지고 소추의 의미가 재판 수행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조항이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률을 근거로 하는 해석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헌법에는 68조 2항에 ‘판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대통령 당선자가 사

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소추가 기소와 재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판결이란 말 쓸 필요가 없지요. 다 소추라고 그냥 쓰면 되지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다수당인 여당의 해석에 맞는 그런 해석을 억지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후보자님,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난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화면 올려 주세요. 지금 예정인데 격론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다음 화면 보내 주세요.

난민들에 대해서 과연 이 소비쿠폰 지급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난민법에 따르면 29조에 보면 난민이 여러 가지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난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에 1544명 정도의 난민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아주 소액이고, 소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또 이 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거든요. 저 화면 보시면 당시에도 난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혐오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재정상 아주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난민인정자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하고 시민단체가, 4만여 명의 국민하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에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제삼자가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2006년도에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저거 보시면 '국가는 사인인 제삼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헌법재

판소가 이것을 심사할 때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판결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염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소보호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만약에 판결을하게 되면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난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최후의 보루로 판단을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후보자님, 우리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민적 사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대통령 취임 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6조와 제69조에도 평화적 통일에 대한 책임과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고 또 통일이 국가적 사명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북한이 주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국민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걱정이 됩니다만 이와 별개로 지금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정신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가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지금, 그 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통일부’라는 명칭이요 헌법에 근거한 통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어떤 상징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1969년에 출범이 됐는데 이 이후에 부처 이름이 몇 번 바뀌기는 했는데요 ‘통일’이라는 용어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국통통일원’ 혹은 ‘통일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빠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능적으로 보면 사실 외교부 산하에서 통일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통일부를 별도로 독립된 부처로 두는 이유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일부를 독립적인 중앙부처로 유지하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그 흐름을 맞춰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 선언했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친북 단체들이요 부랴부랴 자기들 강령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조직개편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우리 정부가 통일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신경 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후보자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참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제목이지요. 차별을 금지한다,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법안 내부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차별금지 사유가 여러 개가 열거가 돼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것은 2020년도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사유를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관, 가치관을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비판을 했는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혐오 표현이라 해 가지고 제재를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사상 통제의 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성적 지향이라는 이런 문제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고……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조배숙 위원** 어떻게 사람이 의견이 다 똑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지요. 입틀막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관한 인식이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에 이미 동성혼 불인정이 위헌이라면서 커플 열한 쌍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예요. 이것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성평등은 뭐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을 주체로 보는데 성평등은 반드시 그렇게 대립적인……

○**조배숙 위원** 성이 다양한 거잖아요. 아주 다양한 성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성으로, 우리가 지금 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체제가 다 구축이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양한 성이라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님께서는 성평등 사조로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나 정도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후보자님, 현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아까 위원님 대답인데 일부……

○**장동혁 위원** 너무 당연한 조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일부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가 예외적으로……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재가 그렇게 해석하고 또 한정위헌결정 자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창설해 냈기 때문에 늘 대법원과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지명됐더라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가 지명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하도록 한 취지가 뭘까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법관의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그리고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법관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은 대통령도 3명, 국회가 3명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또 3명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은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성절차 자체가, 구성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회가 3명 지명하도록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하도록 한 이유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은 헌법적 결단, 헌법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결국은…… 지금은 누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 사건에서, 탄핵심판이나 또 다른 여러 사건들에서?

그런데 지금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규정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 그랬는데 이 규정과 재판소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후보자는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재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박희승 위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 계속 질의를 해서 저도 한마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저도 헌법소원 관련해서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헌법을 만들 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맡고 있는 헌법 관련 사건들도 처리하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 헌법 전공하신 분이 바로 후다닥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촉발한 게 잘 아시겠지만 사법의 정치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표적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법원도 사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소화를 못 할 지경인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기 사건도 처리를 못 해 가지고 계속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마당에 재판도 헌법 위반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지금 대법관을 증원해야 되나, 현재대로 해야 되나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하급심을 강화해서 사실은 지금의 상고로 되는 사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연구관 오래 해 보셨잖아요, 10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희승 위원**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니지요, 공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박희승 위원** 그렇지만 독일의 판사와 똑같이, 독일의 대법원 판사와 같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현실하고 법체계하고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하급심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판연구관도 하급심으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님 말씀이, 법원의 판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심이 최우선적으로 강화가 됨으로써 항소·상고 사건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도 사실은 그런 큰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도,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법관 증원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재판도 넣어서 심판한다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잘못하면 이게 자칫 3심, 4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후보자님의 양쪽 견해가 달라서 여쭙는 말입니다.

답변하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 견해가 그렇게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재판소원에 관해서 저는 이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하면서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법관에게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게 한정위헌입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예.

○**장동혁 위원** 그래서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법이나 여기에 없는 주문을 헌법재판소가

하나 창설해 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자존심 싸움이다. 그래서 한정위헌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법원 나름대로 법률을 해석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기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정위헌을 내고 이렇게 법률해석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은 사실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정위헌결정을 했는데 당신들이 안 따르니까 그렇게 안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가져다가 다시 한번 따져 보겠다라고 한 게 지금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것은 오롯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는 독창적인 주문을 창설해 내면서 법원과 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그 자존심 싸움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져다가 재판소원을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했던 사안입니다.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 위헌 아니면 합헌이지요.

그리고 연혁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맨 처음에 법원과 기싸움을 하면서 기형적으로 나왔던 그 사례를 가지고 재판소원이 일반적으로 아니면 예외적으로 폭넓게 인정돼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법관의 임명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 이런 여러 내용들을 보면 저는 재판소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희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관을 중원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한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로 맞춰 놓게 되면, 결국은 한 대통령이 대법관을 너무나 많은 수를 임명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대법관 수를 늘리면 헌법을 만들면서 임기를 그렇게 해 놓은 그 기본적인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늘린다 하더라도 몇 명으로 늘릴지 그리고 늘리는 시기와 방법과 늘리는 규모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대법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이미 동의를 한 바가 있고요. 재판소원에 관해서도 그 역사적 경위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 재재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두겠습니다.

제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였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도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이 해 주신 당부와 격려, 충고를 늘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오영준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영준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이춘석 장경태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첨가 위원(1인)

전현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출석 공직후보자

오영준